

# 국제결제론

## 제1장 국제결제의 이해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유 하상 교수

# ❖ 제1장 목차



## 제1절 국제결제의 기초개념

1. 국제거래와 국제결제
2. 국제결제의 유형과 이해관계

## 제2절 국제결제 관련법규

1. 국제결제 관련법규의 개관
2. e-UCP



### □ 국제결제의 수단(p.15)

#### ■ 외환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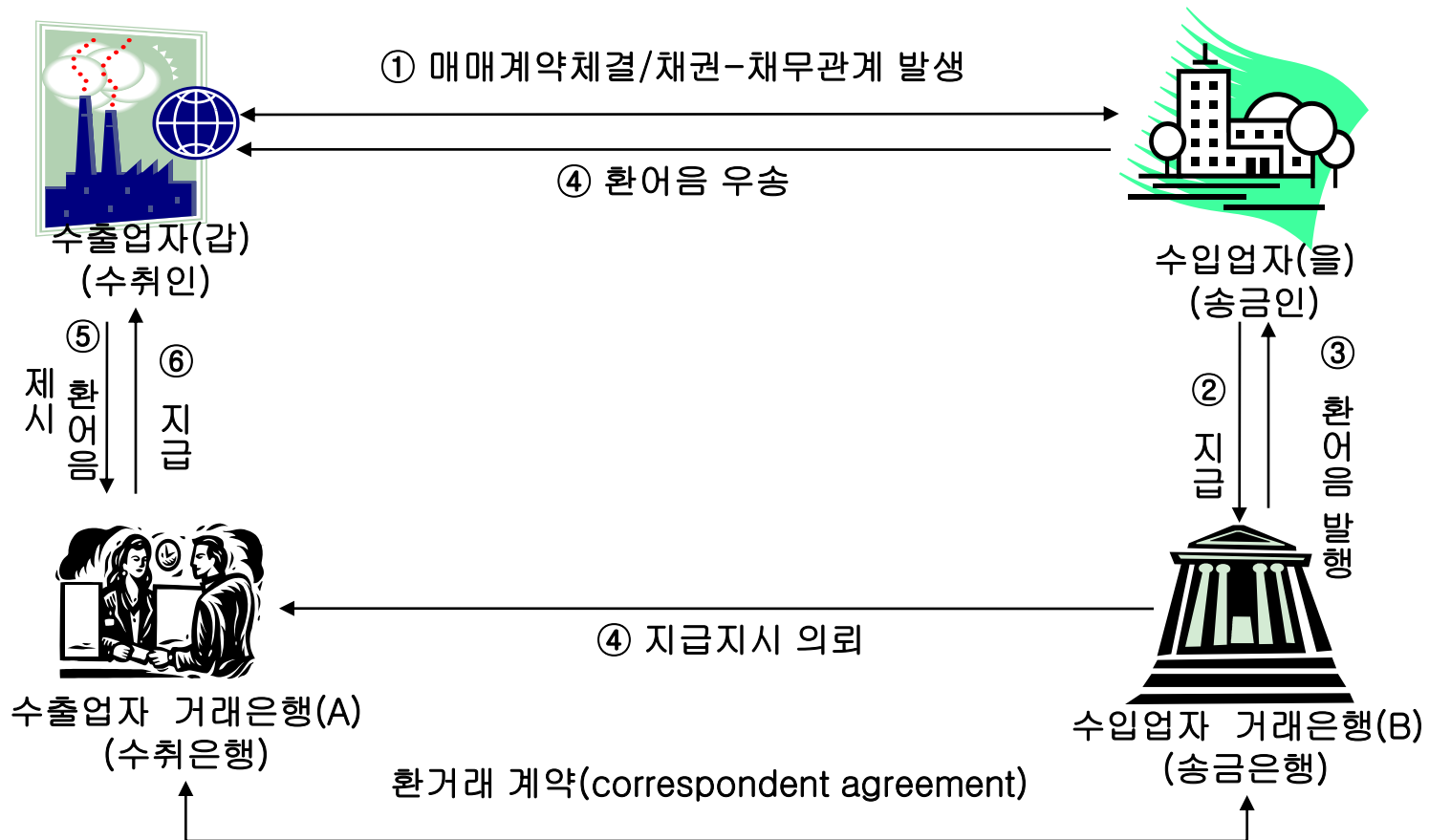
- 환이란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 현금을 보내는 불편과 위험을 덜기 위해 제3자(은행 등)를 중재자로 하여 현금을 송금하지 않고 그 대신에 어음이나 증서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함
- 외국환(foreign exchange, FX)
- 내국환(domestic exchange)

### □ 국제결제의 수단

#### ■ 환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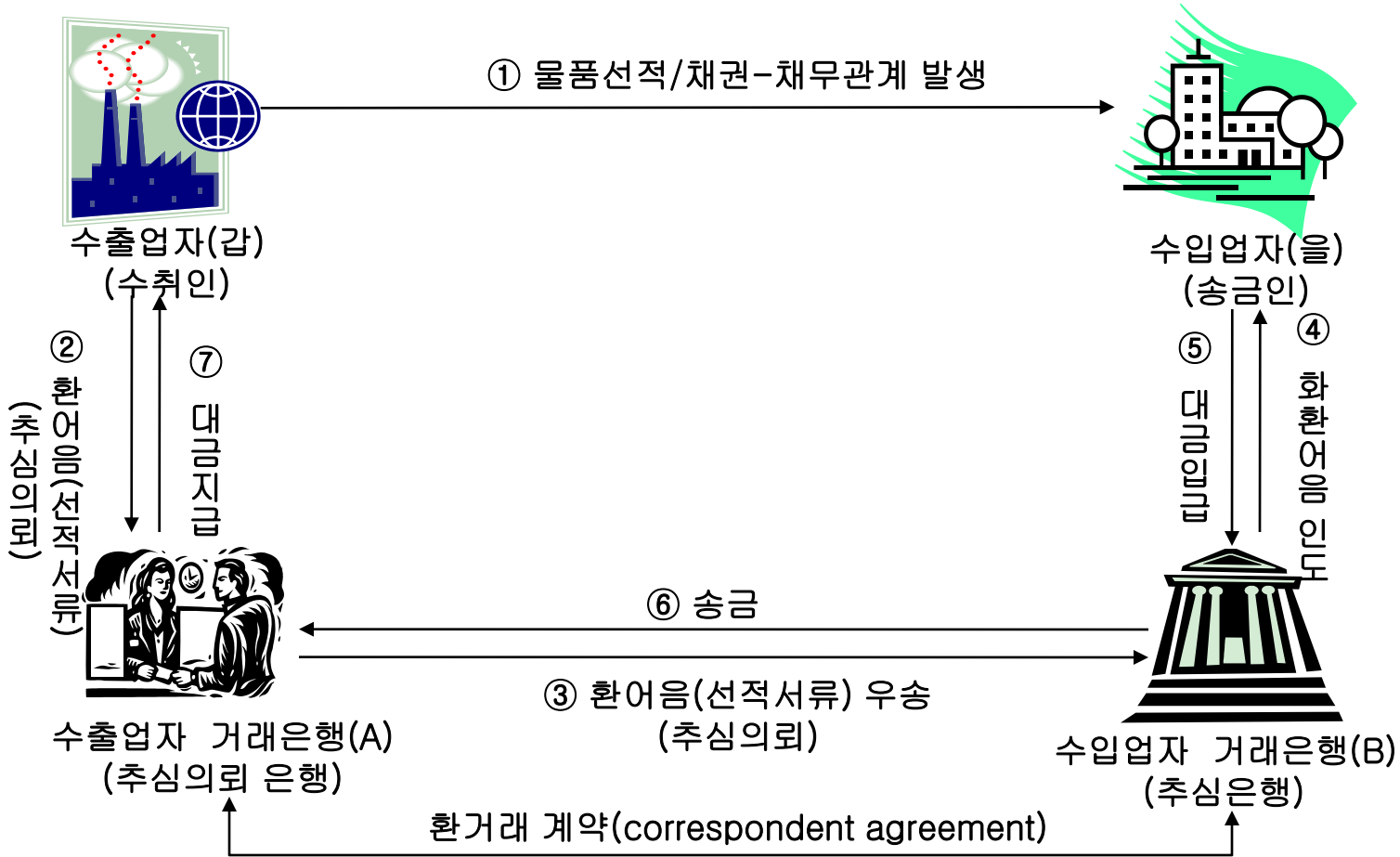
##### 순환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



### □ 국제결제의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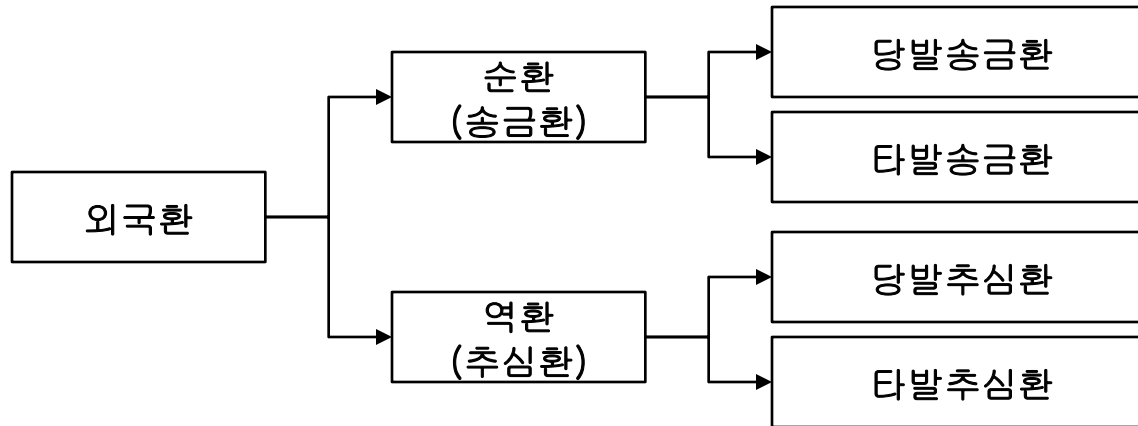
**역환** •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추심환)



### □ 국제결제의 수단

당발환과 타발환

•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추심환)



### □ 국제결제 방식의 유형(p.18)

신용장방식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상의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근거로 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
무신용장 방식	현금결제	CWO, COD, CAD
	물품결제	물물교환(bater trade)
	송금방식	수입상이 수출상 앞으로 상품대금을 은행송금 환어음 또는 은행수표 등의 방법으로 송금해주는 방법
	추심방식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를 첨부해서 은행에서 할인을 받거나 또는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는 방법
	상호계산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총액을 서로 상계하고 그 잔액만을 지급하는 결제방식. 주로 본·지사간의 거래에 이용되며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기타방식	국제팩토링	국제팩토링 회사가 신용인수 범위 내에서 수입상과 수출상의 국제결제를 중재해주는 금융기법
	국제포페이팅	수출상의 채권을 소구권 없이 할인, 인수해주는 금융기법
	전자결제	전자수표, 전자자금이체, 무역카드, 전자신용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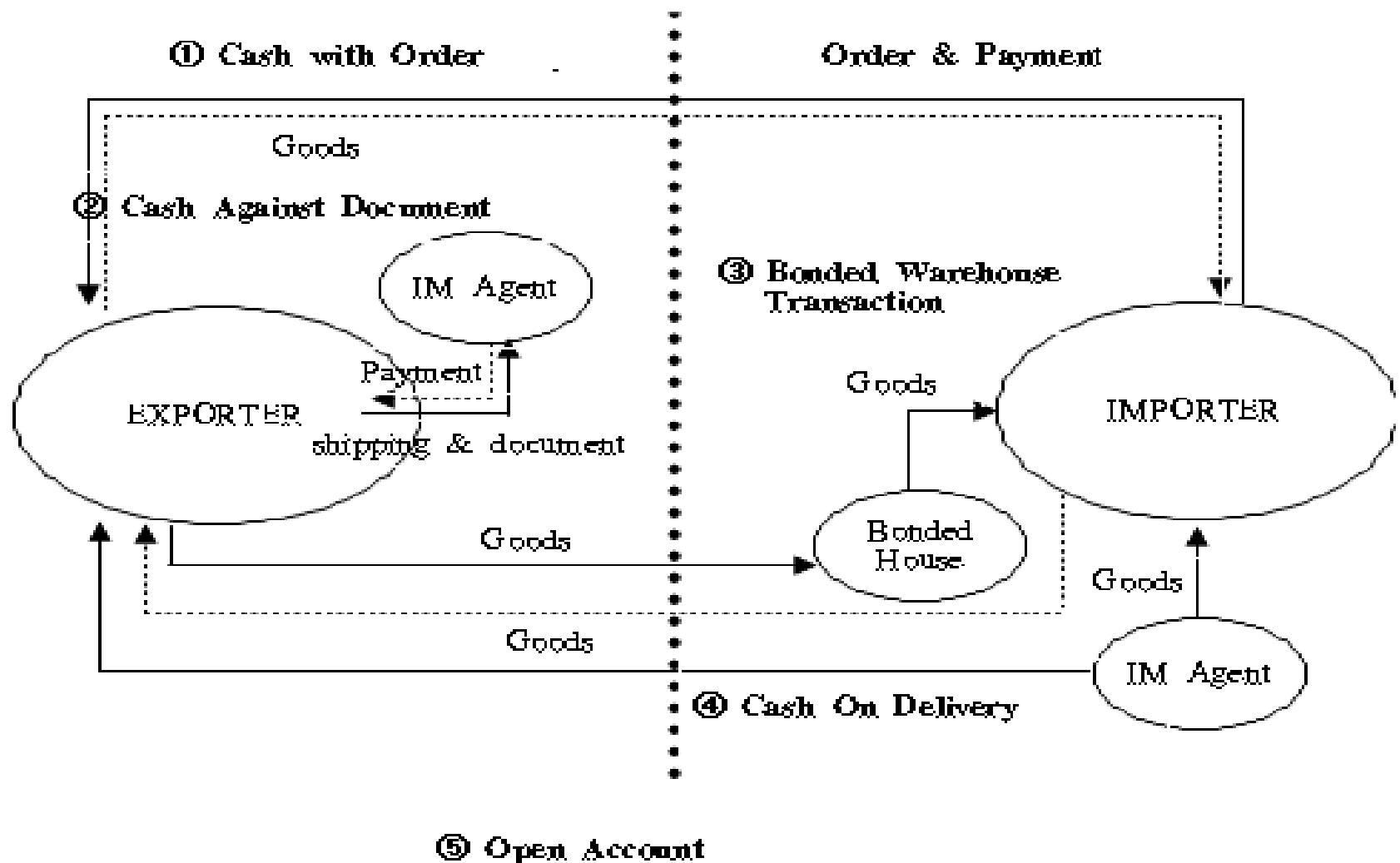
	유형
선지급	현금선지급(cash in advance, CIA) : 물품 인도 전에 현금지급
	주문시현금지급(cash with order, CWO) : 물품의 주문과 동시에 현금지급
	사전송금방식(remittance basis) : 물품인도 전에 전신송금환(T/T)/우편송금환(M/T)/송금수표 송금
	선대신용장(red clause credit) : 수출상의 신용장 수령과 동시 대금결제
동시지급	현품인도지급(cash on delivery, COD) : 물품 인도와 동시에 현금지급
	서류인도지급(cash against document, CAD) : 서류인도와 동시에 현금지급, 선적인도(cash on shipment)라고도 한다.
	지급인도조건(document against payment, D/P) : 대금이 지급되면 동시에 서류인도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 : 수출상의 환어음이 발행은행에 제시됨과 동시에 대금지급
후지급	청산계정(open account, O/A) : 일정기간에 서로 상쇄하고 남는 차액만 청산하여 결제
	위탁판매(sales consignment) :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판매된 부분씩 결제
	인수인도조건(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 : 수출상이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서류가 인도되며, 대금은 어음만기일에 지급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 수출상이 환어음의 인수함과 동시에 서류가 인도되고 어음만기일에 대금지급
	연지급신용장(deferred credit) : 환어음을 첨부없이 선적서류만 연지급은행에 제시하고, 동 은행은 연지급확약서만 발행하고 서류를 인수하였다가 신용장에서 지정된 지급만기일에 대금결제
혼합지급	일부선지급(XX % advance money) : 주문과 동시에 일부대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선적후 지급
	분할지급(instalment/progressive/rate payment) : 일정기간으로 나누어 누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 □ 국제결제 조건의 선택(p.21)

국제결제조건 선택시의 유의사항

- 거래 상대국의 통상적인 지급조건
- 경쟁자들이 제시하는 지급조건(지나치게 관대한 조건 제시도 주의)
- 자금사정
- 상품의 계절성(농산물은 수확기보다 성장기에 장기신용 조건이 요구됨)
- 상품의 수명(신용기간이 상품수명보다 길지 않도록)
- 이익의 가능범위(이윤이 신용비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야 함)
- 거래상대국의 외환규정(저개발국일수록 외환규정이 엄격함)
- 거래통화의 환율변동위험(환위험이 클수록 단기조건 요구가 커짐)
- 신용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실질적인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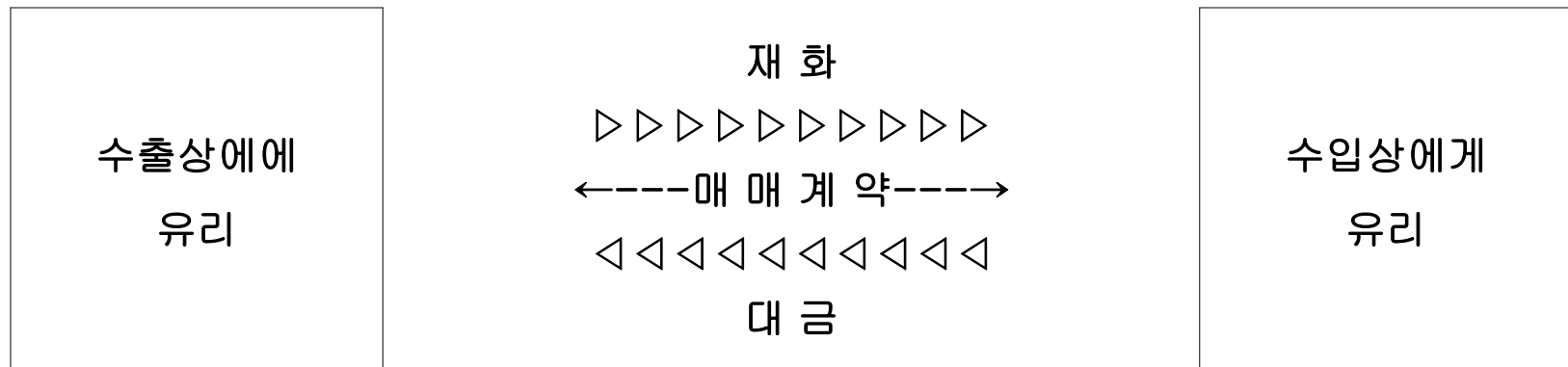
### □ 국제결제 조건의 선택



### □ 이해관계와 무역위험(p.23)

#### ■ 무역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

- 매매당사자 모두에게 공평한 방법은 물품의 인도와 대금이 동시에 교환되는 상환금(cash on delivery, COD) 방식임



【선지급】 -----> 【상환금】 <----- 【후지급】

### ■ 무역위험과 국제결제방식

- 무역위험(Trade risk)의 유형
  - 운송위험(transportation risk) : 거래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송달되는 과정에서 손실, 멸실 또는 도난, 분실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비상위험(emergency risk, political risk) :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수입금지 또는 제한, 환거래의 제한, 기타 정부의 무역제한조치 등과 같이 거래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국가위험(country risk)이라고도 한다.
  - 환율변동위험(exchange rate risk) : 환율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
  - 신용위험(credit risk) : 거래 상대방이 고의 또는 어떤 상황으로 계약인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함으로써 또는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위험
- 무역위험의 커버
  - 운송위험은 적하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음
  - 기타위험은 민간보험에서 인수하지 않으므로 커버되기 곤란, 한국에서는 수출지원 차원에서 수출보험공사에서 기타위험에 대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무역당사자 스스로 신용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신용장거래를 들 수 있음

### □ 국제결제 관련 국내법규와 관리기구(p.25)

#### ■ 국제결제 관련 국내법규와 관리기구

##### 국제결제관련 국내법규

- 민법 제3편 제2장(계약) : 계약에 관련된 규정
- 상법 : 무역과 관련된 보험, 운송, 결제에 관한 규정
- 어음법
- 외국환 거래법

##### 외국환 관리기구

- 기획재정부
- 한국은행
- 금융감독위원회
- 세관

#### □ 국제결제 관련 국제규칙(p.26)

##### ■ 신용장 방식과 관련된 규칙

- UCP(환환신용장통일규칙)
- e-UCP(전자신용장통일규칙)
- ISBP(국제표준은행관행)

##### ■ 추심방식에 관련된 규칙

- URC(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 URR(은행간 대금상환 통일규칙)

### □ e-UCP의 특징(p28)

- 전자적 제시에 적용됨
  - 서류란 전자기록을 포함
  - 전자적 기록의 제시장소 : 전자주소
  - UCP의 보칙에 해당(UCP의 빈번한 개정을 지양하기 위함)
- 종이서류와 전자기록의 혼합제시도 가능(완전한 전자적 제시의 촉진을 위함)
- 전자적 발행과 통지에 관한 언급 회피 : UCP 규정 적용에 무리가 없으므로
- 전자적 제시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e-UCP의 모든 조항은 UCP 조항과 일치하므로 상호연계하여 적용
  - 다만 e-UCP와 UCP의 적용이 상호 모순되는 경우 e-UCP 우선적용

### □ e-UCP의 내용(p.29)

#### ■ e-UCP의 적용범위와 UCP와의 관계

- e-UCP는 전자적 제시에만 적용, 종이서류는 UCP 적용
- e-UCP를 준수하는 신용장은 UCP가 자동으로 적용됨
- e-UCP 적용이 UCP 적용과 상호 모순될 때에는 e-UCP 우선적용



## 주요용어의 해석

17

용어	의미
documents(서류)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place for presentation (제시장소)	전자주소를 의미한다.
sign(서명)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electronic signature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전자기록을 인증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한 사람이 실행하거나 채택하여 전자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기록과 논리적으로 연관되는 데이터 프로세스를 말한다.
electronic record (전자기록)	전자적 수단에 의해 생성, 발생, 송신, 전달, 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말하는데, 전자기록이 종이서류에 상응하는 서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송신자의 신본, 전자기록에 포함된 데이터의 분명한 출처 그리고 완전하고 변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는 인증이 가능해야 하며, 둘째, e-UCP 신용장의 조건과의 일치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어야 한다.
format(형식)	format이란 전자기록이 표시되거나 인용되는 자료조직을 말하는데, 예컨대 plain text, PDF, Zip, tarfile, PostScript, XML 등이 있다.
	전자적 기록이 전용 가능한 수신자의 정보시스템에 의해 전송될 수 있는

### ■ e-UCP 신용장의 형식 및 제시

- e-UCP신용장은 제시되어야 할 전자기록의 형식(format)을 명시해야 함
  - Commercial Invoice issued in PDF Format.
  - 명시하지 않을 때에는 어느 형식의 전자기록도 제시될 수 있음
- 전자기록과 종이서류의 혼합제시를 허용한 때에는 전자주소(electronic address)와 거리 주소(street address)를 모두 지정해야 함
- 전자기록은 전통(full set)의 제시가 의미가 없음(1통만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
  - 또한 각각의 발행인(운송사, 보험사 등)으로부터 따로따로 제시될 수 있음(동시에 제시되지 않아도 됨)
- 모든 서류의 제시가 완료되면 수익자는 그 사실을 은행에 완결통지를 해야 함
  - 완료통지(note of complete)가 없으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통지는 종이서류, 전자기록 모두 사용가능
  - 근거가 되는 전자신용장을 명시해야 함

#### Notice of Complete

WE HAVE COMPLETE PRESENTATION UNDER OUR DOCUMENTARY CREDIT IN RESPECT OF A DRAWING FOR THE AMOUNT OF USD10,000.

### Notice of Complete

WE HAVE COMPLETE PRESENTATION UNDER OUR eLC NO 2954 ..... IN RESPECT OF A DRAWING FOR THE AMOUNT OF USD10,000.

- 은행이 전자기록을 수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은행이 폐점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제시일자 또는 만기일은 전자기록을 접수할 수 있는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까지 연장됨
- 다른 모든 서류는 제시되고 완료통지만 남았을 때는 전화, Fax, 종이서류 등 모든 통신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 ■ 전자기록의 심사

- 완결통지를 접수한 영업일 다음 최초 영업일로부터 기산됨
- 심사대상 전자기록을 직접 접수하지 않고 외부시스템에 제공되는 경우
  - 해당 웹페이지 주소 제시 또는 hyperlink 표시
  - 지정된 외부시스템에 접속(access)하지 못하는 경우, 하자로 간주하여 인수거절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전자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형식(format)으로 제시되었다면, 발행은행(확인은행)의 사정으로 그 형식으로 심사가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이를 인수거절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
- 전자메시지가 훼손되는 경우 은행은 그 사실을 제시인에게 통지하고 재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재제시될때까지 심사기간 기산 중단, 재제시 일자 다음 영업일부터 다시 기산
  - 재제시를 요구하였으나 30영업일(calenda days) 이내에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 전자기록이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30영업일 마지막 날이 공유 일이라고 하더라도 재제시 기한은 연장되지 아니함

### ■ 전자기록의 거절통지

- 은행이 전자서류의 인수를 거절하기로 하였다면, 그러한 사실과 그 불일치 사항은 빠짐없이 기록하여 심사기간 내에 거절통지를 제시인에게 보내야 함
- 거절통지는 1회에 한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하자를 이유로 지급거절 불가
- 거절통지를 접수한 제시인은 30일 이내에 제시한 전자기록에 대한 처분에 관한 지시를 제공해야 함
  - 처분지시가 없으면 모든 종이서류는 제시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전자기록은 은행이 적절히 처분할 수 있음

### ■ 기타

#### 전자기록의 원본 및 사본

- 한 통 이상의 원본 또는 사본의 전자기록 제시를 요구하였더라도 한 통의 전자기록의 제시로 충족됨

#### 전자기록의 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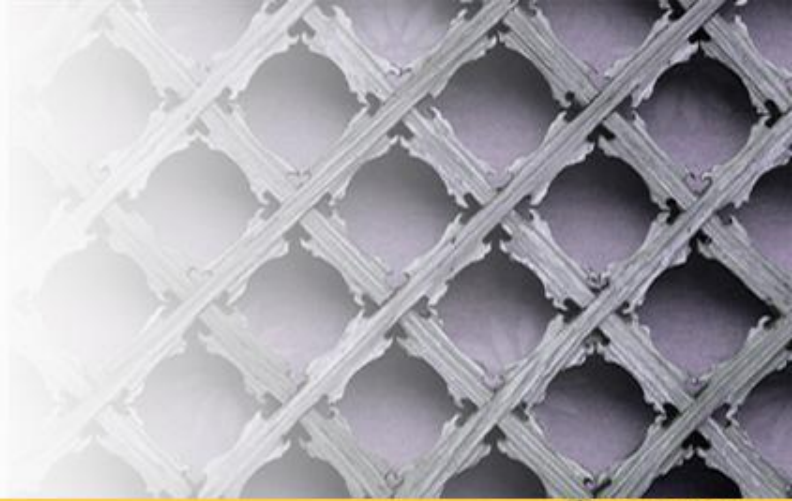
- 전자기록의 특정 발행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발행인에 의해 발신된 날을 발행일로 간주함, 발행일도 없으면 수신일을 발행일로 간주

#### 전자기록 운송서류의 선적일

- 운송을 증명하는 전자기록에 선적일 또는 발송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전자기록의 발신일을 선적일로 간주함, 다만 본선적재일이 부기되어 있다면 그 날을 선적일로 간주함

#### 전자기록 제시에 대한 책임에 대한 추가면책

- 입견상 전자기록의 인증이 충족되었다면 송신자의 신원, 정보의 출처 또는 완전하고 변조되지 않았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감사합니다

